

무궁화35·36호 정기수리 관급자재(주기관) 구매 사양서

1. 용어의 정의

- 가. “발주자” 라 함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 나. “공급자” 라 함은 관급자재(주기관) 구매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다. “검사관”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기관장이 본선 관계직원 중 물품의 검수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2. 적용기준

본 사양서는 서해어업관리단이 발주한 ‘무궁화35·36호 정기수리 관급자재(주기관) 구매’ 건에 적용한다.

3.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4. 장비명

- 가. 제 작 사 : STX엔진
- 나. 형 식 : STX-B&W 8L27/38, 2,920kW×800RPM×2대

5. 품질보증

- 가. 납품되는 물품(‘Gasket 16개’ 등 86종, ‘Piston-Ring 16개’ 등 86종) 은 규격에 맞는 순정(또는 호환)부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수 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기한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 나. 납품 시 공급자는 해당물품에 대해 제작사 등에서 발행한 ‘순정부품 확인서(순정품인증서) 또는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를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자재의 경우 ‘공급자’ 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물품 납품 후 품질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납 품

가. 납품은 검사관의 합격을 받은 후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수를 받는 도중 불합격품이 발생할 경우 불량 부품은 입고가 불가하므로 지체 없이 해당 선박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준수하여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장소(선박)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납품 전에 검사관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내에 적절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일에 선박으로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7. 표기 및 포장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형상과 종량, 성질에 맞게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품명 및 규격, 납품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품 명	
규격/PART NO.	
제 조 사	

8. 기 타

가. 제작사 부품이 성능향상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기종.품명.규격 상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